

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전병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75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전병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규남, 김영철, 김용일,
김지향, 김형재, 남창진,
박강산, 박승진, 박영한,
박철성, 봉양순, 서상열,
신복자, 아이수루, 유정인,
, 유정희, 윤종복, 이상욱,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
임춘대, 최민규, 한 신,
홍국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- 또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4조의2)
- 나.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장애인복지법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원사업)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
2.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
3.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
4.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
5.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4조의2(지원사업)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2.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.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.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역량 강화에 관한 사업 5.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<p><신 설></p>	<p>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/p>